외교부 공고 제2026 - 170호

외교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외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외교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공지능(AI) 외교	전문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 ~ 2028.7.2.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서울)
조약 번역·검독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 ~ 2028.4.30.	국제법률국 조약과(서울)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인공지능(AI) 외교	전문임기제 가급	○ AI행동계획 외교부 과제 이행·관리 ○ 국가AI전략위원회 포함 유관 부처·기관 업무 협력 ○ 우리나라 주도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지원(글로벌AI허브, 아태AI센터 등) ○ 글로벌 AI 기술 및 거버넌스 동향 파악·분석 ○ 기타 AI 관련 양자·다자 대외협력 업무
조약 번역·검독	전문임기제 나급	○ 아래 분야 조약의 번역 및 검독 - 경제·통상, 조세, 투자보장, 사회보장, 개발협력 관련 조약 - 사법공조, 영사, 인권·인도법 관련 조약 - 그 밖의 분야의 조약 ○ 분야별 조약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례집 발간 ○ 조약 문안교섭 및 체결 지원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 임용예정일(2026.12.28.) 기준]

채용분야	임용직급	직위별 요건	
인공지능(AI) 외교	전문임기제 가급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대외협력, 법무·경영, 일반행정, 정책홍보 및 컴퓨터·정보시스템 등 관련 직무 경력 ※ (예시) **AI 관련 정책 담당 업무/ AI 외교·안전·책임·윤리 관련 연구·업무/ AI 기업·연구소 대외협력 담당 업무/ UN, OECD 등 국제기구 경제·과학기술 분야 대외협력·정책자문 업무/ AI 플랫폼 기획·구축·관리 등** **[관련 학위]** 공학・이학・국제정치・외교・법・경영・경제・행정・커뮤니케이션, 데이터사이언스 등 관련 학과 및 유사 전공			
조약 번역·검독	**전문 임기제 나급**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국제법,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 이와 관련 있는 분야 영어 통·번역 **[관련 학위]**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유사 학과 포함), 법학(국제법 등)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요건. 학위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예]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중에서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6.12.2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채용분야에 따라 최종(면접)시험일이 다르므로 유의**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 제9호 양식 활용(별지 제9호 경력(재직)증명서상 직인 또는 발급자 서명 없을 시 불인정)

- 동일 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내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경력증명서 작성

 * [예] 22.1.1.~25.12.31.간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A업무를 수행하다 B업무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에 **"△기관 A업무(22.1.1.~23.12.31.), △기관 B업무(24.1.1.~25.12.31.)"로 구분하여 작성 / "△기관 A,B업무(2022.1.1.~2025.12.31.)"로 작성 지양**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강의 경력의 경우 담당과목, 시수가 명시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인턴, 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담당업무, 업무수행 기간(또는 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3인 이상)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10.12.) 기준]

전문임기제 가급 (인공지능(AI) 외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실적
전문임기제 나급 (조약 번역·검독)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한 학위 제외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변호사 자격 취득자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10.12.)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 외의 이력(어학성적, 학위 등)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이전의 경력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

-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유사학과 포함), 법학(국제법 등)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수료증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예] 한영 통번역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요건 학위①으로 응시한 경우,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통번역학 박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해당 응시자가 한영 통번역학 석사학위 보유시, 해당 석사학위는 우대 가능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응시자가 제출한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우대요건 대상 범위
TOEIC 790점이상 / TOEFL (PBT 567점 / CBT 227점 / IBT 86점 이상) / TEPS 385점 이상 / FLEX 700점 이상

※ 서류접수마감일(26.10.12)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영어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점수별 차등 우대(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채용분야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전문임기제 가급 면접일 11.18, 전문임기제 나급 면접일 11.19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실적(학위논문 제외, 최대 5건, 건별 차등우대)

※ 최근 5년 이내('21.1.1.이후)에 SCI, SCIE,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변호사 자격 취득자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전문지식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전문임기제 나급(조약 번역·검독) 면접시험시 별도 과제(번역, 작문 등) 제시 예정

 ※ 구체 사항은 면접시험 이전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9.29.(화) ~ 10.12.(월)	'26.10.7.(수) ~ 10.12(월)	'26.11.11.(수)	'26.11.18(수) ~ 11.19.(목)	'26.11.30.(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시험일자

 - 11.18(수) 전문임기제 가급(인공지능외교) / 11.19(목) 전문임기제 나급(조약 번역·검독)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0. 7.(수) ~ 10. 12.(월)
-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퀵, 택배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10.16.(금)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접수처 : (우)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담당관실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겉봉에 **'외교부 인공지능외교분야(전문임기제 가급) 응시원서 재중'** 또는 **'외교부 조약번역검독분야(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추가제출)**	○ 별지서식 제8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10호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권고

- 특히 재직중인 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재직)중인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 방법

- 응시자격요건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우대요건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제출서류의 진위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어(영어 제외)로 기재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9호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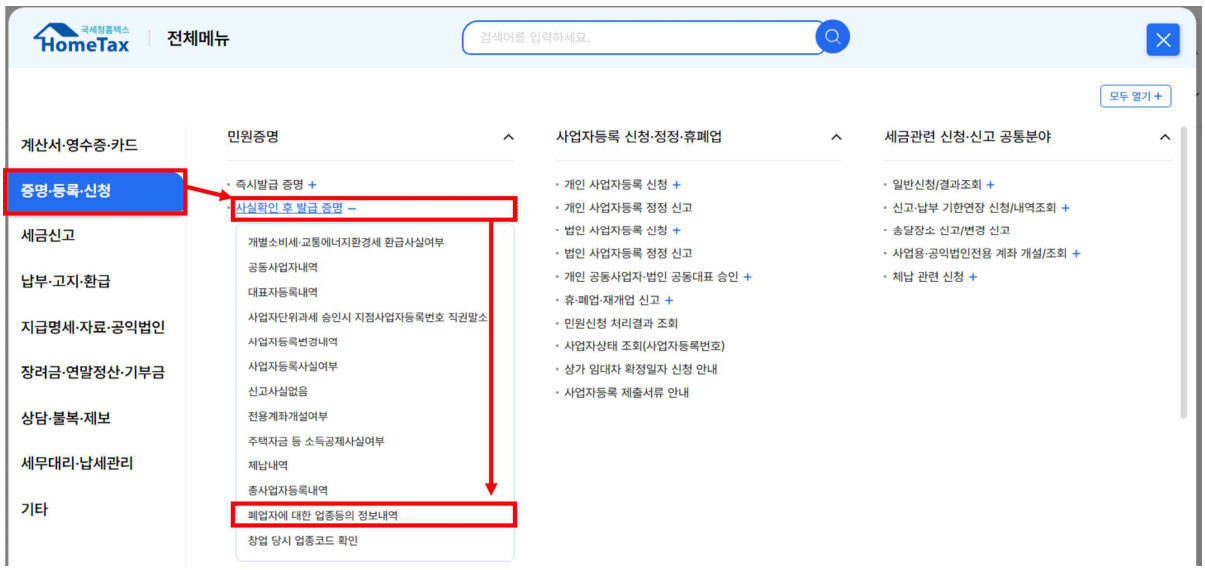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1. 30 ~ 12. 3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12.28.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기간

구분	채용 기간	
전문임기제 가급	임용일 ~ 2028. 7. 2.	※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전문임기제 나급	임용일 ~ 2028. 4. 30.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9,663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여타 수당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예. 면접시험일 등)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 판단하에 가입여부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외교부 인사운영담당관실(☎02-2100-7146 / 786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붙임 2. 직무기술서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끝.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시행일: 2026.10.22.)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시행일: 2026.10.22.)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1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공지능(AI) 외교	전문임기제 가급	1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서울)

주요 업무	○ AI행동계획 외교부 과제 이행·관리 - 글로벌AI외교플랫폼 운영·관리 - 재외공관 AI 전문관 운영·관리·지원 - 글로벌AI이니셔티브 범부처 협의회 지원 - 글로벌AI 안전 거버넌스 구축 - 글로벌AI 기본사회 얼라이언스 구성 등 ○ 국가AI전략위원회 포함 유관 부처·기관 업무 협력 ○ 우리나라 주도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지원(글로벌AI허브, 아태AI센터 등) ○ 글로벌 AI 기술 및 거버넌스 동향 파악·분석 ○ 기타 AI 관련 양자·다자 대외협력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정책 관련 전문성 ○ AI 기술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
응시자격 요건 –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응시자격 요건 – 학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대외협력, 법무·경영, 일반행정, 정책홍보 및 컴퓨터·정보시스템 등 관련 직무 경력

(예시) AI 관련 정책 담당 업무/ AI 외교·안전·책임·윤리 관련 연구·업무/ AI 기업·연구소 대외협력 담당 업무/ UN, OECD 등 국제기구 경제·과학기술 분야 대외협력·정책자문 업무/ AI 플랫폼 기획·구축·관리 등

※ 관련분야 학위 : 공학 · 이학 · 국제정치 · 외교 · 법 · 경영 · 경제 · 행정 ·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학과 및 유사 전공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구간별 차등배점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경력 (예시) 참고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유효기간*내 영어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실적 ※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최대 5건까지 인정, 학위논문 제외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11.18)(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은 임용예정일(12.28)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10.12)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2-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약 번역·검독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조약과(서울)

주요 업무	○ 아래 분야 조약의 번역(영→한) 및 검독 - 경제·통상, 조세, 투자보장, 사회보장, 개발협력 관련 조약 - 사법공조, 영사, 인권·인도법 관련 조약 - 그 밖의 분야의 조약 ○ 분야별 조약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례집 발간 ○ 조약 문안교섭 및 체결 지원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집행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전략적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해당 분야의 영한 번역을 위한 전문영어 및 법률용어 활용 지식 ○ 양자·다자 조약의 문안교섭 및 체결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 ○ 해당 분야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대한 배경지식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
응시자격 요건 –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응시자격 요건 – 학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제법,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 이와 관련 있는 분야 영어 통.번역
※ 관련분야 학위 :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유사 학과 포함), 법학(국제법 등)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구간별 차등배점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경력 참고 ○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한 학위 제외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유효기간*내 영어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변호사 자격 취득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11.19)(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은 임용예정일(12.28)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10.12)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1호)	○ 제출내역 체크 후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6.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전공분야 표시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추후 임용예정일(2026.12.28.)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8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첨부** **- 미제출시 해당 학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필수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관련 서류가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 후 제출 필요**

구 분	내 용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시 별지서식 제9호 활용)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8.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9.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2021.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0. 변호사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취득자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 .	□ 인공지능외교 □ 조약 번역·검독

▣ 작성목록(총괄표) ※ 제출서류에 체크 표시(√)

순서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①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포함)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 미제출
⑥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 제출 □ 미제출
⑦	학위논문요약서(석·박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 제출 □ 미제출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⑨	공인어학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⑩	변호사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⑪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요약서(해당자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⑫	주민등록초본	□ 제출 □ 미제출
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⑭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 **제출 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않고 집게로 집어 제출, 양면인쇄 금지)**

위와 같이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 제출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외교부 장관 귀하

본인은 외교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 인공지능(AI) 외교**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 조약 번역·검독** 중 택1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원서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배부하지 않습니다.
2.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이메일 또는 SMS문자를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인공지능(AI) 외교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조약 번역·검독 중 선택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유의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2. **미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전문임기제 가급, 전문임기제 나급)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1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인공 지능 외교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명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 력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 위	행정학	'00.00.00	행정학 석사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 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5.1~12.31.(○○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 유효기간
어학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월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 논문 여부
연구논문	한글명(영문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3-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조약 번역 검독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명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	행정학	'00.00.00	행정학 석사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5.1~12.31.(○○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전공분야	학위취득일	학위종류
학위			
	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 유효기간
어학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의 이력서 양식으로 작성

– '인공지능외교' 또는 '조약번역검독' 중 선택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학위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2년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3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를 기재(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과 동일하게 작성)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6.10.12)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어학 해당자만 작성

- 공인영어성적 : 응시자가 제출한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 원서접수마감일(26.10.12)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영어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점수별 차등 우대(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2년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채용분야별 면접일 : 전문임기제 가급 11.18, 전문임기제 나급 11.19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해당자에 한하여 전공·취득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석사-박사 순으로 작성(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연구논문

- 등재구분 : 2021.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

 ※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기타 증빙서류 제출 및 서명

-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이력서에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하단의 작성자 확인란(날짜, 성명, 서명)만 자필로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첨부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상벌사항	포상			징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서식 제10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